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KOSHA GUIDE 기술지원규정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A-G-3-202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구사항을 이행하는데 참고하거나 사업장 안전·보건 수준향상에 필요한 기술적 권고 규정임

기술지원규정의 개요

○ 작성자 : 대한기계학회 서상호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 제·개정 경과

- 2011년 6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제정위원회 심의(제정)
- 2012년 5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 2024년 11월 산업안전일반분야 전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 2025년 1월 표준제정위원회 본위원회 심의(개정, 법규개정조항 반영 등)

○ 관련규격 및 자료

- 음식 및 숙박업 사고사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0

○ 기술지원규정의 적용 및 문의

- 이 기술지원규정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portal.kosha.or.kr)의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규정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표일자 : 2025년 3월 26일
제 정 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목 차

1. 목 적 ····· 1

2. 적용범위 ····· 1

3. 용어의 정의 ····· 1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 1

5.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무 ····· 15

<별표>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체크리스트 ····· 17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1. 목 적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에는 충돌, 넘어짐, 추락 등 여러 유형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규정은 이러한 유형별 사고사례에 따른 위험요소와 예방대책을 제시함으로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작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1)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머플러”란 오토바이에서 배기 가스가 배출될 때 나는 폭음을 줄이거나 없애는 장치를 말한다.

(나) “보차도 경계석”이란 차량의 무단 인도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돌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4.1 넘어짐

4.1.1 오토바이의 넘어짐

(1) 위험요소

(가) 오토바이로 배달 중 앞이 어두워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나) 오토바이 운전 중 골목길 등에 걸려 있는 나이론 줄 등에 오토바이가 감겨져 넘어질 수 있다.



<그림 1> 어두움으로 인한 넘어짐



<그림 2> 줄에 감김으로 인한 넘어짐

(다) 오토바이 운행 중 아스팔트의 차선 표지선을 밟을 때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다.



<그림 3> 차선 표지선을 밟고 넘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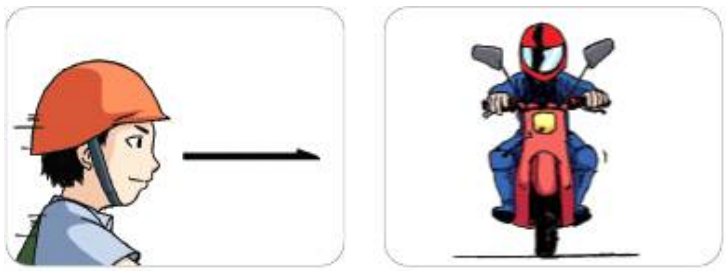
(2) 예방대책

(가) 오토바이 운행 중에는 전방 주시를 확실히 하여야 하고, 주위가 어두울 때는 항상 전조등을 켠다.



<그림 4> 어두움으로 인한 오토바이의 넘어짐 사고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나) 도로 이외의 길로 운행을 금하고, 전방의 이상 물체 확인을 철저히 한다.



<그림 5> 줄에 감김으로 인한 오토바이의 넘어짐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다) 아스팔트의 차선 위는 미끄러우므로 차선 위에서는 급정거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림 6> 차선 표지선을 밟고 넘어짐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라) 오토바이 운행 중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팔꿈치보호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4.1.2 배달원의 넘어짐

(1) 위험요소

(가) 계단을 급하게 오르거나 내려갈 때 발을 헛디디거나 물기 등이 있을 경우 미끄러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 어두운 지하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림 7>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그림 8> 어두운 지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짐

(다)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라) 눈 위나 속에 있는 금속막대 등에 의해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림 9> 빙판에 의해 넘어짐



<그림 10> 눈 속의 금속막대 등으로 밟고 넘어짐

(2) 예방대책

(가) 계단을 내려갈 때는 뛰지 말고 난간을 잡고 천천히 내려간다. 계단에서 핸드폰 조작 등의 불필요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면 미끄럼 방지 기능이 우수한 신발을 신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11>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나) 조명이 어두운 계단은 계단 난간을 확실히 잡고 안전하게 내려가야 한다. 어두운 장소에서의 이동을 대비하여 항상 휴대용 손전등을 지참하여야 한다.



<그림 12> 어두운 지하 계단에서 굴러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

(다) 인도의 바닥에 빙판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빙판 위를 지나야 할 경우에는 빙판 위에 모래 또는 흙을 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끄러지지 않게 최대한 주의하여야 한다.



<그림 13> 빙판에 의해 넘어짐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라) 눈길은 조심해서 천천히 걸어야 하고, 이물질을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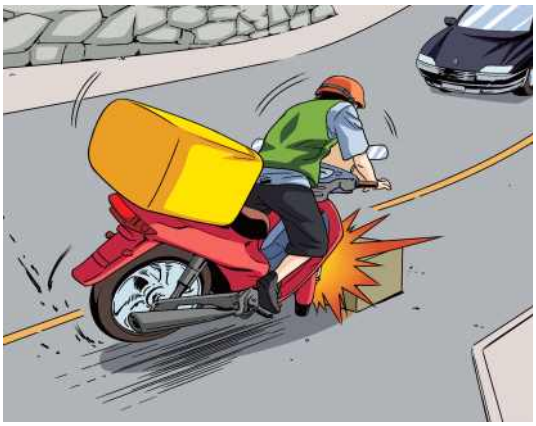
<그림 14> 눈 속에 있던 금속막대를 밟고 넘어짐 사고 예방대책

4.2 충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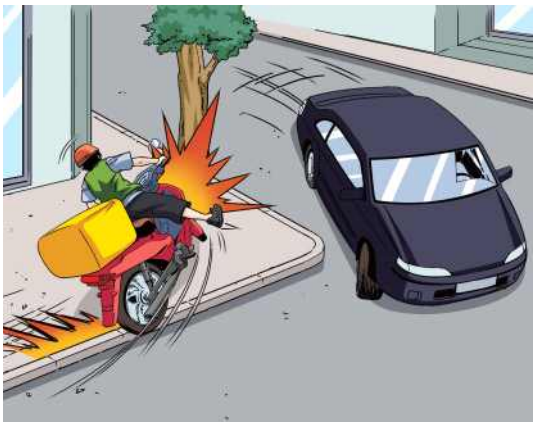
(1) 위험요소

(가) 공동주택단지 입구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등에 충돌하여 넘어질 수 있다.

(나) 골목길에서 오토바이 운전 중 갑자기 튀어 나온 차량 등을 피하려다가 가로수나 건물 벽 등에 충돌할 수 있다.



<그림 15> 차량 진입 방지석에 충돌



<그림 16> 차량을 피하려다 충돌

(다)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턱에 부딪혀 상해를 입을 수 있다.



<그림 17> 계단 턱에 부딪힘



<그림 18> 현관문에 충돌

(라) 급하게 뛰어 올라가다 현관문 등에 충돌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

(2) 예방대책

(가) 오토바이 운전 중에는 공동주택 단지 입구에 설치된 보차도 경계석 등에 충돌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는 서행 및 지정된 통로로 출입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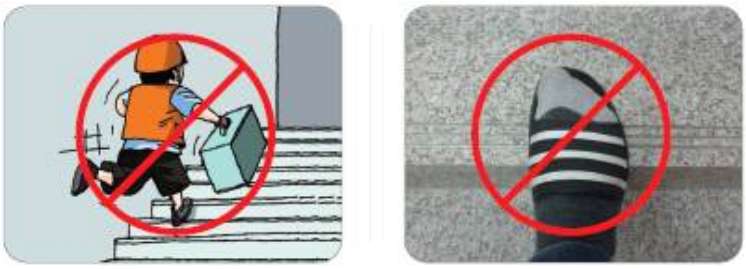
<그림 19> 보차도 경계석 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나) 골목길에서는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하고, 천천히 운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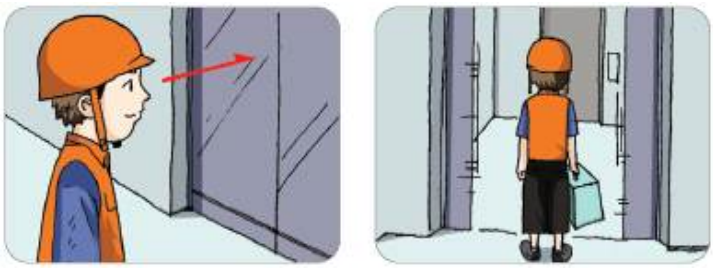
<그림 20> 가로수 등의 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다) 계단에서는 뛰어 올라가지 않아야 하며,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슬리퍼와 같이 앞이 트여 있는 신발은 착용하지 않는다.



<그림 21> 계단 턱 부딪힘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라) 현관문 등에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확인을 철저히 하고, 유리문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자동문은 완전히 열린 상태에서 들어간다.



<그림 22> 현관문 충돌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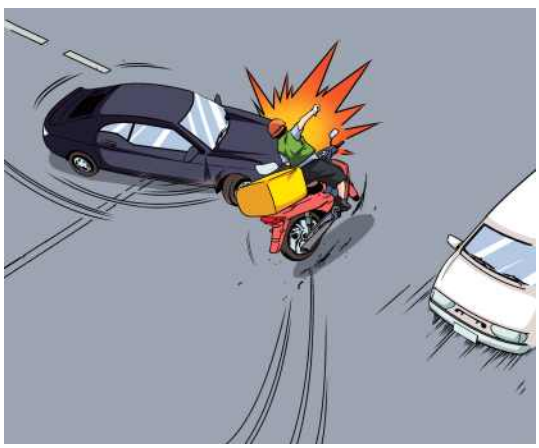
4.3 교통사고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치명적인 사고의 대부분은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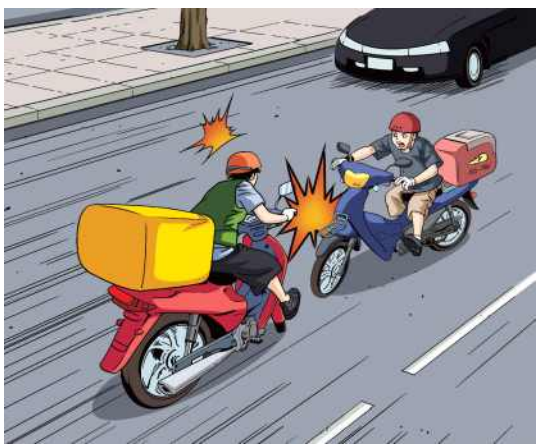
(1) 위험요소

(가) 신호등 신호 혹은 수신호를 무시하거나 황색등에 출발하여 주행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및 추돌할 수 있다.

(나) 골목길 등 좁은 길에서 역주행하는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여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림 23> 배달 중 다른 차량과 충돌



<그림 24>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

(다) 혼잡한 공동주택단지 입구에서 과속하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라) 버스 등의 차량의 뒤를 따라가다 앞의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여 뒷 범퍼 부분에 추돌할 수 있다.



<그림 25> 공동주택단지 내 차량충돌



<그림 26> 갑자기 정차하는 버스와 추돌

(마) 타이어가 갑자기 파손되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바) 겨울철 오토바이 주행 중 빙판길을 지나다 넘어져 사고를 당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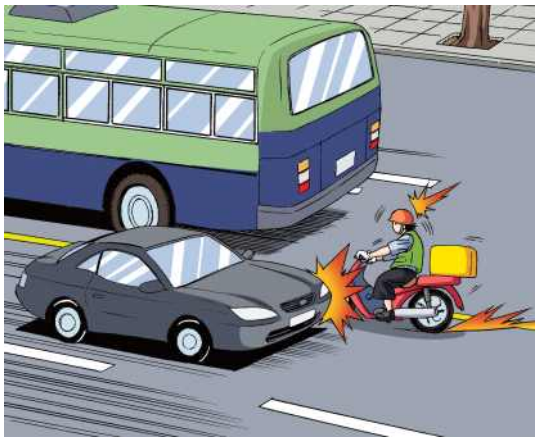


<그림 27> 타이어 펑크로 인한 사고



<그림 28> 빙판에서 넘어짐 사고

(사) 시간에 쫓기어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반대 차선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그림 29> 중앙선 침범에 의한 사고

(2) 예방대책

(가)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배달 시에는 아무리 시간이 급해도 교통신호는 철저히 준수하고, 교차로에서는 좌우 확인을 철저히 하며, 예측 출발 혹은 신호가 바뀌기 전 출발은 절대 금한다.



<그림 30>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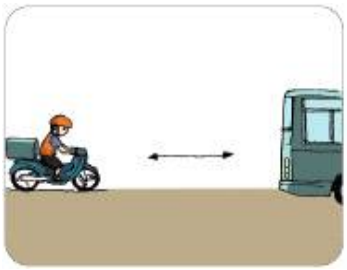
(나) 골목길 등 좁은 길에서는 돌발 상황에 대비해 서행운전을 하고, 역주행 차량, 과속차량 등 위험차량 발견 시에는 경적 혹은 라이트를 깜박거려 경고신호를 보낸다.



<그림 31> 역주행하는 오토바이와 충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다) 혼잡한 공동주택 입구에는 과속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좌·우를 살피며 최대한 서행을 하여야 한다.

(라) 버스 등 차량의 뒤를 따라 갈 때는 앞 차의 급정거에 대비하여 앞 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그림 32> 갑자기 정차하는 버스와 추돌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마) 매일 오토바이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교체한다.

(바) 겨울철에는 도로의 결빙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비 또는 눈이 올 때나 결빙된 도로를 통과할 때에는 최대한 서행운전을 한다.

(사) 오토바이 운행 중 어떤 경우라도 중앙선 침범과 과속은 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33>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4.4 끼임

(1) 위험요소

(가)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작업 시 변속기어 페달에 신발이 끼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나) 오토바이의 변속을 위해 발판을 밟을 때 발이 발판에 끼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림 34> 오토바이 변속 시 신발이 끼임



<그림 35> 오토바이 발판에 신발이 끼임

(다) 배달 시 주방이나 출입문 등에 손가락 등이 끼면서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림 36> 출입문에 손가락이 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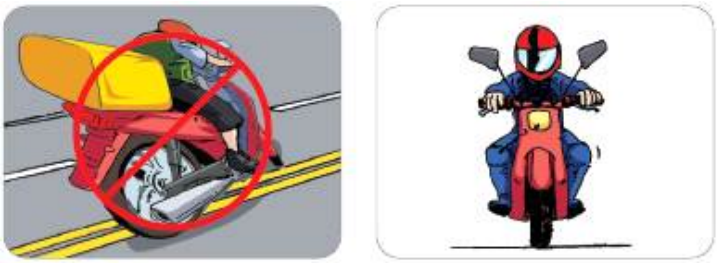
(2) 예방대책

(가) 매일 오토바이 운행 전에 브레이크, 변속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페달 등에 신발이 끼지 않도록 한다.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 교체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운전 전에 신발 끈, 복장 등을 단정히 한다.



<그림 37> 오토바이 변속 시 신발 끼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나) 오토바이 운전 중 발판 등에 발이 낄 수 있으므로 과격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



<그림 38> 오토바이 발판에 신발 끼임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다) 배달작업 시 문 등에 손가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고, 문의 개폐 시 손잡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 오토바이 운행 중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팔꿈치보호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4.5 화상

(1) 위험요소

(가) 오토바이 운전 중 오토바이가 기울거나 넘어졌을 때 다리가 오토바이 엔진에 닿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나) 오토바이를 정차시킨 후 뒷부분의 배달통을 열 때 오토바이 머플러에 종아리가 닿아 화상을 입을 수 있다.



<그림 39> 오토바이 엔진에 의한 화상



<그림 40> 오토바이 머플러에 의한 화상

(다)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낼 때 그릇을 놓쳐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당할 수 있다.

(2) 예방대책

(가) 오토바이 운전 중 오토바이가 기울거나 넘어짐에 따라 작업자의 다리가 오토바이 엔진에 닿는 화상 등의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오토바이 운전 중에는 과격하거나 무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림 41> 넘어진 오토바이 엔진에 의한 화상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나) 오토바이 뒷부분의 배달통을 열 때 다리 부분이 가열된 머플러에 접촉되어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배달작업 시에는 반바지를 입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림 42> 오토바이 머플러에 의한 화상에 대한 사고 예방대책

(다) 오토바이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낼 때 그릇을 놓쳐서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배달되는 음식의 내용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뚜껑을 확실히 닫고, 주의 깊게 음식그릇을 다루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5.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무

5.1 사업주의 책무

(1) 정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 시 즉시 수리, 교체한다.

(2)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3) 평소 주위 도로의 상태나 지리에 대하여 충분하게 숙지시킨다.

(4) 면허증 미소지자에게 절대 오토바이 운행을 금지시킨다.

(5) 근로자가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숙지시킨다.

(6) 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구를 지급한다.

(7)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빠른 배달을 요구하지 않는다.

5.2 근로자의 책무

(1) 반드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다.

(2) 과속이나 핸들 과대조작, 급제동을 하지 않는다.

(3) 평소 오토바이를 철저하게 정비한다.

(4) 반드시 승차용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팔꿈치보호대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5) 기상상태나 도로 바닥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운행한다.

(6) 사업주의 지나치게 빠른 배달요구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거부한다.

(7) 운행 중 전방상태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 앞 차량과 안전거리 확보, 규정속도 준수, 무리한 차선변경 금지 등 교통법규를 지키도록 한다.

<별표 1>

오토바이 배달작업 시 체크리스트

연번	항목	체크
1	오토바이 배달 시 승차용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팔꿈치보호대 등을 착용하는가?	□
2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안전속도, 교통신호, 안전거리 등)을 알고 준수하는가?	□
3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감속 운행하는가?	□
4	오토바이 정비는 정기적으로 하는가?	□
5	배달용 오토바이에 적재함이 고정되어 있는가?	□
6	계단에서 급하게 뛰지 않고, 계단 난간대를 잡고 올라가는가?	□
7	어두운 곳을 갈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용 랜턴 등을 소지하고 있는가?	□
8	작업 전·후 스트레칭을 실시하는가?	□
9	비가오거나 야간에도 시인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색과 형태의 복장을 착용하였는가?	□

기술지원규정 개정 이력

□ 개정일 : 2025. 2. 3.

○ 개정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기술실

○ 개정사유 : 개정된 규칙에 따라 개인보호구 착용 사항을 반영

○ 주요 개정내용

- **(4. 위험요소와 예방대책)** 도로교통법에 적합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수정

□ 재공표 : 2025. 3. 26.

○ 기술지원규정 영문 명칭(KSH-GUIDANCE→KOSHA GUIDE)으로 재공표

KOSHA GUIDE
기술지원규정

·규정번호 : A-G-3-2025
·심　　의 :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공 표 일 : 2025. 3. 26.